

교수연구년제 규정

제정 2001. 02. 01 개정 2013. 04. 01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03. 31
 개정 2016. 02. 04 개정 2016. 08. 26
 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연구에 전념하여 전공분야의 발전과 새로운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의 일상업무를 떠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허가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3조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근속 및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구년 시행학기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년수에는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기간, 휴직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3)

1. 본 대학교에서 7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잔여 년수가 4년 이상인 경우
2. 본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 년수가 4년 이상이며 국가 또는 공인된 민간연구기관에서 해외연수출장이 예정된 경우 (개정 2016. 08. 26.)
3.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본 대학교에 계속해서 7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하고 정년퇴임시 까지 잔여 년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및 학교법인 경북대학에서의 전임교수 재직 경력이 인정되어 부교수이상의 직위로 신규 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후 2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년수가 4년 이상인 경우
5.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 12. 23)

제4조 (신청 및 철회) ①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시작학기의 개강일 6개월 이전에 교수연구년 허가 신청서, 교수연구년 연구계획서, 교수연구년 서약서, 교수연구년 교과운영 및 학사업무 대행 동의서 등(별지1)을 첨부하여 기획조정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 12. 23, 2014. 03. 31, 2018. 10. 29.)

② 연구년 발령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개시 2개월 전까지 교수연구년 철회신청서(별지2)를 기획조정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3, 개정 2014. 03. 31)

제5조(승인) ① 기획조정처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기초로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보고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 12. 23, 2014. 03. 31)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차 선정하고, 총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한다.

③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08. 26.)

가. 연구년 승인여부는 신청자의 근속년수, 교원업적평가자료, 연구계획, 학교발전 기여도, 재학률 및 취업률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2. 23.)

나. 교환교수, 국비해외파견, 해외장기여행, Post-Doc 등으로 6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한 경우

에는 연구년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매학기의 연구년 인원은 교환교수, 국비해외파견, 장기해외여행,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출장 파견 및 연수교원을 포함하여 전체 전임교원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학기내에 동일 학부(과)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을 시작하기 3개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8. 26.)

제6조 (대우) 연구년이 허가된 교원(이하 연구교원이라 한다)의 대우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교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연구년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재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08. 26.)

② 연구년 기간 중의 보수는 편제정원 내 학과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재학률과 같은 비율의 연봉월액을 매월 지급한다. 단, 보직수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2.)

③ 연구년 기간중의 승진은 보류한다.

제7조 (연구과제) 연구과제는 KCI(SCI급) 논문 투고 또는 저(역)서 발간을 수행하되 그 외에 다음 각 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조신설 2016. 08. 26.)

1. 학과 발전을 위한 기업실무연수(직무)참여, 취업과 연계된 자문활동, 교외연구수주
2. 취업연계가 가능한 취업보장형 산학협력협약 체결
3. 소속학과의 NCS관련 및 전공실무 교육 훈련 및 연수
4. 사회맞춤형 주문식학과 및 계약학과(재교육형 또는 채용조건형) 유치

제8조 (연구변경) ① 연구목적 및 연구 과제는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수연구년 연구 계획 변경 신청서(별지3)를 연구년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08. 26.)

② 연구년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된 연구년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교수연구년 기간변경 신청서(별지4)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연장되는 기간 동안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08. 26.)

제9조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 연구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일부턴 1개월 이내에 교수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별지5)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년 기간종료일부턴 6개월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실적물은 18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2018. 10. 29.)

제10조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실적물은 별도로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무)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 대학교에 교수연구년 복귀신고서(별지6)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2018. 10. 29.)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3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③ 제 1항 및 제 2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에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④ 연구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 대학의 강의와 타 기관 근무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구년

수행기관에서의 특강, 자문은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⑤ 제7조의 연구과제 및 제10조의 연구결과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및 각종 교내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하며, 연구결과와 평가 및 처분 다음 달부터 연봉을 10% 삭감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08. 26., 2018. 10. 29.)

⑥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보직은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02. 04, 개정 2016. 08. 26.)

제12조 (관련업무조치) 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강의 및 직무는 연구년 개시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연구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08. 26.)

제13조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년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자 개정규정의 시행·적용을 위하여 제4조의 연구년 신청 기한과 제5조의 연구년 승인 기한은 2014년 1학기 연구년 개시를 원하는 교원에 한하여 연구년 시작학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개정 2013.12.23., 2018.10.29.)

교수연구년허가신청서

접수일자				
신 청 자	소 속			직 명
	성 명		근무기간 ~ (년 개월)
	연구년 신청기간 ~		
연 구 년 허 가 신 청 내 용	연구 과제	1. [영역1] :		
		2. [영역2] :		
		3. [영역3] :		
	연구기간 중 체류지	연구지(기관)	체류국가	
	연구목적			
연 구 년 기 간 중 연 락 처	국 내	주 소 :		
		전 화 :		
	연구지	주 소 :		
		전 화 :		
불임 : 1. 교수연구년 연구계획서, 2. 교수연구년 서약서 3. 교수연구년 교과운영 및 학사업무 대행 동의서 4. 기타관련서류 본인은 「교수 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 연구년 종료 후 즉시 교수연구년 복귀신고서(별지6)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귀 후 6개월 이내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 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교수연구년 연구계획서 (개정 2013.12.23., 2018.10.29.)

연구자	소속		직명	
	성명			
	연구기간 ~		
연구과제구분	1. 영역1 () 2. 영역2 () 3. 영역3 ()			
연구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상세 내용				
연구결과 기대효과				
첨부서류				

교수연구년 철회신청서

접수일자				
신 청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 구 년 허 가 기 간 및 철회 사유	연 구 년 허 가 기 간			
	철회사유			
붙임 : 관련서류				
<p>본인은 「교수 연구년제 규정」에 의해 _____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연구년 선발의 철회를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200px;">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서명 또는 인)</p> <p>경동대학교 총장 귀하</p>				
※ 연구년 선발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개시 2개월 전까지 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함.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별지 3] (개정 2013.12.23.)

교수연구년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				
연구자	소속		직명	
	성명			
	연구기간 ~		
구분	연구과제 변경전 (당초연구과제)		연구과제 변경후 (변경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상세내용			<별지사용가능>	
연구결과기대효과				
첨부서류 (연구변경사유)				

본인은 교수연구년제 연구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구 계획 변경을 요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교수연구년 기간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							
신청자	소속				직명		
	성명						
변경요청사항	변경요청	구분	단축()연장()	연구년 허가기간			
		기간					
	변경요청 사유						
붙임 : 관련서류							
본인은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의해 _____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 되었으나 위와 같이 그 기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 기간변경은 한 학기에 한하여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허가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별지 5] (개정 2013.12.23., 2018.10.29.)

교수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 [영역1]

접수일자						
연구기관 (국가/기관)						
일정	출발 : . . . 귀교 : . . . 연구기간 : . . . ~ . . .					
연구내용	1. 연구과제(논문, 저역서 제목) : 2. 발표(예정)기관 : 3. 발표(예정)일 : 4. 연구자(저자)수 : 5. 분량 : 6. 내용요지 : 7. 첨부 :					
교수 연구년제 규정 제 9조(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div> 소속 : 학부(과) 전공 직명 성명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제출기한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년 월 일)		제출부수	2부		
●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 ● 대학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부속자료를 제출.						

교수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 [영역2]

접수일자						
연구기관 (국가/ 기관)						
일 정	출 발 : 귀 교 : 연구기간 : ~					
연구내용	1. 연구과제 : 2. 연구실적 : 3. 내용요지 : 4. 첨부 :					
교수 연구년제 규정 제 9조(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div> 소 속 : 학부(과) 전공 직 명 성 명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제출기한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년 월 일)	제출부수	2부			
●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 ● 대학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부속자료를 제출.						

교수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 [영역3]

접수일자						
연구기관 (국가/ 기관)						
일 정	출 발 : 귀 교 : 연구기간 : ~					
연구내용	1. 연구과제 : 2. 개발강좌 : 3. 내용요지 : 4. 첨부 :					
교수 연구년제 규정 제 9조(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소 속 : 학부(과) 전공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직 명 성 명 (인) </div> <p style="margin-top: 10px;">경동대학교 총장 귀하</p>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제출기한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년 월 일)	제출부수	2부			
●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 ● 대학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부속자료를 제출.						

[별지6] (개정 2013.12.23.. 2018.10.29.)

교수연구년 복귀신고서

접수일자						
복귀 신고자	소속			직명		
	성명		근무기간	. . . ~ . . . (년 개월)		
	연구년 신청기간	. . . ~ . . .				
교원 연구년 활동보고	연구 과제명	[영역1]				
		[영역2]				
		[영역3]				
	연구기간중 체류지	체류국가	국내() 국외() 기타()	연구지		
	국가명					
활동사항						
연구 성과요약	국외					
	국내					
붙임 : 1. 여권(입출국증명 페이지) 1부						
본인은 「교수 연구년제 규정」 제11조(의무)에 따라 위와 같이 복귀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학과(부)장	교무처장	담당	기획과장	기획조정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